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03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권인숙·오영환·김철민

윤미향 · 김경만 · 이수진

윤영덕 · 장혜영 · 이탄희

정청래 · 서동용 의원

(119]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임.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하여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함.

한편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 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 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

-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마.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금지행위
-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행위
- <u>마. 「아동복지법」제17조에</u> 따른 금지행위
-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
 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 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 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 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 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 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 야 한다.